

직제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및 성결대학교 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 제16장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성결대학교의 기본 행정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총장, 부총장

제2조 (총장) 총장은 학교의 대표자로서 교학 및 행정전반을 장리하며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3조 (부총장)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, 총장 유고시에는 교학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 (비서실) ① 비서실은 총장에 관한 비서업무를 관장한다.

② 비서실 실장은 교직원 중에서 보한다.

제4조의 2 (대학혁신추진실) ① 대학혁신추진실은 대학 장·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, 대내·외 평가,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전략과, 평가지원과,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을 둔다.

③ 대학혁신추진실장과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,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, 부참사로 보한다.

제4조의 3 (대학일자리센터) 삭제 <2018.11.19.>

제4조의 4 (대학혁신지원사업단) 삭제 <2021.01.25.>

제 3 장 교직원

제5조 (전임교원) ① 전임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하되 그 정원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.

② 제1항의 전임교원 외에 조교를 둔다. 조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6조 (비전임교원) 명예교수, 석좌교수, 대우교수, 겸임교수, 강의교수 및 연구교수, 객원교수, 특임교수, 강사 등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임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

직제 규정(5-1-1)

이를 따로 정한다.

- 제7조 (일반직원)** ① 일반직원은 일반직, 기술직으로 하되 각 직종의 직급별 정원은 정관 제92조 별표 2에 의하며, 행정부서의 정원은 임용권자가 이를 따로 정한다.
- ② 일반직원 외에 필요에 따라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 4 장 대학교 본부

제8조 (본부조직) ① 본 대학교에 교목실, 교무처, 학생지원처, 기획처, 사무처, 입학교류처, 대학일자리개발처를 둔다.

② 실, 처, 센터에는 실장, 처장, 센터장을 두며 기획처와 사무처에는 필요에 따라 부처장을 둘 수 있다.

③ 각 행정부서에는 필요에 따라 계장을 두며, 주사로 보한다.

제9조 (교목실) ① 교목실은 대학 내의 기독교 복음의 전파 및 신앙지도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며, 각종 예배의 운영을 관장한다.

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목실에 교목과를 둔다.

③ 교목실장은 목사로서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또는 대학교원자격 요건을 갖춘 10년 이상의 목회경력자로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고 학원선교를 위해 단과대학에 교목을 둘 수 있으며 교목은 5년 이상의 목회경력자 중에 공채로 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, 부참사로 보한다.

제10조 (교무처) ① 교무처는 학교의 교무 및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무처에 교무과, 학사관리과, 교직원지원센터를 둔다.

③ 교무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제11조 (학생지원처) ① 학생지원처는 학생지도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지원처에 학생지원과, 학생생활지원센터를 둔다.

③ 학생생활지원센터에는 학생상담센터, 생활관, 보건진료소,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며 필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④ 학생지원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,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, 부참사로 보한다.

제12조 삭제 <1999.2.12.>

제13조 (기획처) ① 기획처는 학교의 기획 및 예산과 전산 및 정보화에 관한 교내외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
직제 규정(5-1-1)

-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처에 기획예산과, 정보기획과를 둔다.
- ③ 기획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,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, 부참사로 보한다.

제14조 (사무처) ① 사무처는 학교의 일반행정 및 재무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-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총무과, 시설관재과, 재무회계과를 둔다.
- ③ 사무처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하고, 각 과장은 참사, 부참사로 보한다.

제14조의 2 (학술정보처) 삭제 <2018.11.19.>

제14조의 3 (입학교류처) ① 입학교류처는 입학정책과 전략수립 및 전형, 입학 홍보업무, 유학생 유치 및 외국인 관리, 기타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.

-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학교류처에 입학과, 국제교류과를 둔다.
- ③ 입학교류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,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, 부참사로 보한다.

제14조의 4 (대학일자리개발처) ① 대학일자리개발처는 대학의 진로교육상담, 취업정보관리 및 진로활동추진, 현장실습, 해외취업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.

- ②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일자리개발처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, 해외취업지원센터,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.
- ③ 대학일자리개발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,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, 부참사로 보한다.

제14조의 5 (입학관리처) 삭제 <2018.11.19.>

제 5 장 대학, 대학원

제15조 (대학, 대학원) ① 학장과 대학원장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하여 학생을 지도한다.

- ② 대학과 대학원에 교학과를 둘 수 있다.
- ③ 학장,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고 각 학부(과)장, 전공주임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,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, 부참사로 보한다.

제 6 장 부속·부설기관

제16조 (부속·부설기관) ① 본 대학교에 부속기관으로 대학교회, 학술정보관, 미디어센터를 둔다.

직제 규정(5-1-1)

② 본 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대외사업처, 미래발전연구원, SKU 창업지원단, 교육혁신단, 클러스터추진단, 지역사회협력단, 일자리사업단, 유학생센터를 둔다.

제16조의 2 (대학교회) 대학교회는 담임목사가 관장한다.

제17조 (학술정보관) ① 학술정보관은 도서 및 연구자료 수집, 관리, 열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헌정보과를 두고, XR기반 차세대 미디어 관련 교육 및 인재 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XR센터를 둔다.

② 학술정보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, 문헌정보과장은 관련 자격증을 갖춘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.

제18조 (글로벌센터) <삭 제>

제19조 (언어교육원) <삭 제>

제20조 (홍보미디어센터) ① 홍보미디어센터는 출판부, 성결대학보사, 영자신문사, 교육방송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홍보미디어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② 출판부는 학술연구서 및 기타 필요한 도서간행업무를, 성결대학보사는 학교의 소식을 보도하고 교직원과 학생의 연구결과 발표와 신앙향상을 위한 업무를, 영자신문사는 올바른 학풍의 조성 및 진작, 대학언론 육성 및 창달, 국제 교류를 증진시키는 업무를, 교육방송국은 학교의 공지사항 및 신속한 기사를 보도하며, 신앙과 정서교육에 기여하는 업무를 관장한다.

③ 출판부, 성결대학보사, 영자신문사, 교육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20조의 2 (영자신문사) <삭 제>

제20조의 3 (교육방송국) <삭 제>

제21조 (출판부) <삭 제>

제22조 (생활관) <삭 제>

제23조 (공학교육혁신센터) <삭 제>

제23조의 2 (입학관리본부) <삭 제>

제23조의 3 (교수학습지원센터) <삭 제>

제24조 (대외사업처) ① 대외사업처에는 산학협력단, 평생교육원, 언어교육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1.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, 산학협력을 촉진시키는 업무를 담당한다.
2. 평생교육원은 일반 사회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3. 언어교육원은 재학생들의 외국어 교육,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직제 규정(5-1-1)

② 대외사업처장, 산학협력단장, 평생교육원장, 언어교육원장은 전임교원 또는 특임교수로 보하며, 과장은 전임교원, 특임교수 또는 참사, 부참사로 보한다.

제25조 (미래발전연구원) ① 미래발전연구원은 논문집 발간, 세미나 개최, 국내외 학회 교류 등 성결대학교 내 학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미래발전연구원 산하에는 부설연구소와 인준연구소를 둘 수 있다.

③ 미래발전연구원 및 산하 연구소의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④ 미래발전연구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각 연구소장은 따로 보하지 않고 관련 학부(과)장으로 해당 연구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⑤ 영암신학사상연구소장과 다문화평화연구소장은 따로 보할 수 있다.

제26조 (산학협력단) 삭제 <2018.11.19.>

제27조 (성결복지재단) 삭제 <2013.12.01.>

제28조 (SKU 창업지원단) ① SKU 창업지원단은 창업보육 및 교육, 기술이전, 가족회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② SKU 창업지원단 하부조직에는 SKU BI 센터, 창업교육센터, 기술이전센터, 가족회사 지원센터를 두며 필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③ 창업지원단장, 산하 센터장은 전임교원 또는 특임교수로 보하며, 과장은 전임교원, 특임교수 또는 참사, 부참사로 보한다.

제29조 (창업교육센터) 삭제 <2017.2.21.>

제30조 (교육혁신단) ① 교육혁신단은 대학의 인재상 실현을 위한 역량기반 교육 총괄 관리업무를 수행한다.

② 교육혁신단 산하에는 교육혁신지원센터, 교수학습지원센터, 공학교육혁신센터, 글로벌 경영기술교육연구센터를 둔다.

③ 교육혁신단장 및 산하 센터장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각 센터의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, 부참사로 보한다.

제31조 (클러스터추진단) ① 클러스터추진단은 상생·협력을 통한 융복합 및 현장연계 중심의 미래교육혁신 추진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클러스터추진단 산하에 필요에 따라 하부 클러스터를 둘 수 있다.

③ 클러스터추진단장, 산하 클러스터장은 전임교원 또는 특임교수로 보하며, 과장은 전임교원, 특임교수, 또는 참사, 부참사로 보한다.

제32조 (지역사회협력단) ① 지역사회협력단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.

직제 규정(5-1-1)

- ② 지역사회협력단 산하에 필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- ③ 지역사회협력단장은 직원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임교원 또는 특임교수로 보할 수 있으며, 산하 센터장은 전임교원 또는 특임교수로 보하며, 과장은 전임교원, 특임교수 또는 참사, 부참사로 보한다.

제33조 (일자리사업단) ① 일자리사업단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제공, 일자리사업 추진, 일학습 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② 일자리사업단 산하에 필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- ③ 일자리사업단장은 직원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임교원 또는 특임교수로 보할 수 있으며, 산하 센터장은 전임교원 또는 특임교수로 보하며, 과장은 전임교원, 특임교수 또는 참사, 부참사로 보한다.

제34조 (유학생센터) ① 유학생센터는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② 유학생센터 산하에 필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- ③ 유학생센터장은 전임교원 또는 특임교수로 보하며, 과장은 전임교원, 특임교수, 또는 참사, 부참사로 보한다.

제35조 (XR센터) ① XR센터는 확장현실을 기반으로 교육 및 인재 양성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② XR센터 산하에 필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- ③ XR센터장은 교원 중에서 적임자를 보하며, 과장은 교원 또는 참사, 부참사로 보한다.

제36조 (인권센터) ① 인권센터는 본 대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인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보한다.

제 8 장 위 원 회

제37조 (위원회) ① 본 대학교에 중요업무를 심의 또는 의결케 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둔다.

- ②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 9 장 업무분장

제38조 (업무분장) 본 대학교의 각 부서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

직제 규정(5-1-1)

한다.

부 칙

① (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총장의 발의에 의하여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③ (폐지)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하던 직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8조제1,2항, 제15조제1,2,3항, 제16조, 제16조의 2)은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7조제2항, 제23조, 제23조의 1.2)은 19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6조, 제19조, 제20조, 제20조의 1, 2)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3조의 1)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직제 규정(5-1-1)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6조)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6조, 제23조~제26조)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0조, 제13조)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8조, 제10조~제14조의 3, 제16조~제18조)은 199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6조, 제19조)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8조, 제10조, 제11조, 제14조의 3)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6조)은 200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4조, 제24조의 2)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4조, 제24조의 3, 제24조의 4)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6조, 제8조, 제14조의 2, 제24조의 2)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직제 규정(5-1-1)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6조, 제24조, 제24조의 5)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8조, 제11조, 제13조, 제14조의 3, 제15조)은 200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8조, 제14조의 4, 제16조, 제23조)은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6조, 제19조)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8조, 제24조, 제24조의 2, 제24조의 3)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3조)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8조, 제24조의 2)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4조의 2)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6조, 제23조의 2)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직제 규정(5-1-1)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3조의 3)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3조, 제5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3조, 제14조, 제14조의2, 제14조의3, 제14조의4, 제14조의5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, 제20조의2, 제20조의3, 제21조, 제22조, 제23조의2, 제23조의3, 제24조, 제24조의2, 제24조의3, 제24조의4, 제24조의5, 제24조의6)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0조, 제24조의 4)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1조)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0조, 제15조)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0조, 제11조, 제16조, 제24조의 4)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4조의 5, 제24조의 7, 제24조의 8)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8조, 제14조의 3)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4조의 4)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직제 규정(5-1-1)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4조의 7, 제24조의 8)은 201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7조, 제10조, 제11조, 제16조, 제23조, 제24조의 9)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4조, 제4조의 2, 제4조의 3, 제6조, 제8조, 제13조, 제14의 4, 제16조, 제24조~제35조)은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1조)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4조의 2, 제4조의 3, 제8조, 제10조, 제13조, 제14조의 2, 제14조의 3, 제14조의 4, 제14조의 5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24조, 제26조, 제30조, 제34조, 제35조, 제36조)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6조, 제35조, 제36조, 제37조)은 2018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6조, 제24조)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4조의 2, 제4조의 4, 제6조, 제8조, 제10조, 제13조)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30조)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직제 규정(5-1-1)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6조, 제17조)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4조의 2, 제4조의 4)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1조)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1조)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5조)은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0조, 제30조)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4조의 3 ①,②, 제20조 ①)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1조 ③, 제36조)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4조의4 ②)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5조 ②)은 202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직제 규정(5-1-1)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6조, 제28조)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